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 수렴 〉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21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 수렴	2
※ 참고자료	7
1. 자연환경복원사업 개요	7
2.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절차도	9
3.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체계	10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7일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수립·시행·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7항).

Ⅲ. 검토의견

1.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 수렴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7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 <u>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u>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 ----- . 이 경우 미리 설 <u>명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u>수립</u>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 .	⑦ ----- ----- <u>수립과 주민의견의 수렴</u> -----

현행	개정안
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사업 등을 말하며,¹⁾

현행법은 기후부장관과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사업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한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²⁾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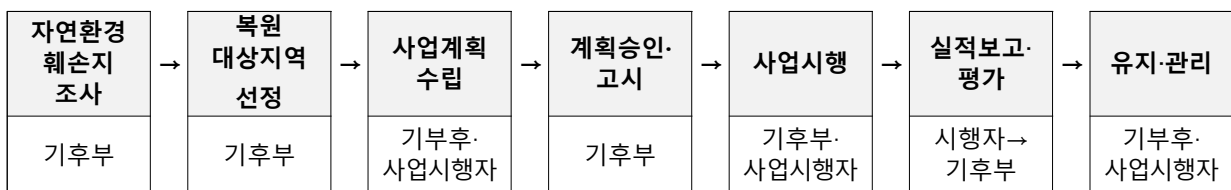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때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 복원 대상지 선정, 자연환경복원 사업계획수립 및 계획승인·고시, 사업시행, 실적 보고·평가, 유지·관리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진행 과정 중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주민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절차]



이에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시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연환경복원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 기본원칙3)’에 대한 고려, 습지보호지역·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사업 등 자연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복원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 필요성, 사업의 민주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과의 관계를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의견수렴 절차⁴⁾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에는 동법의 의견수렴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다양한 조건에 따른 행정절차의 중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견수렴 대상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4)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자연환경복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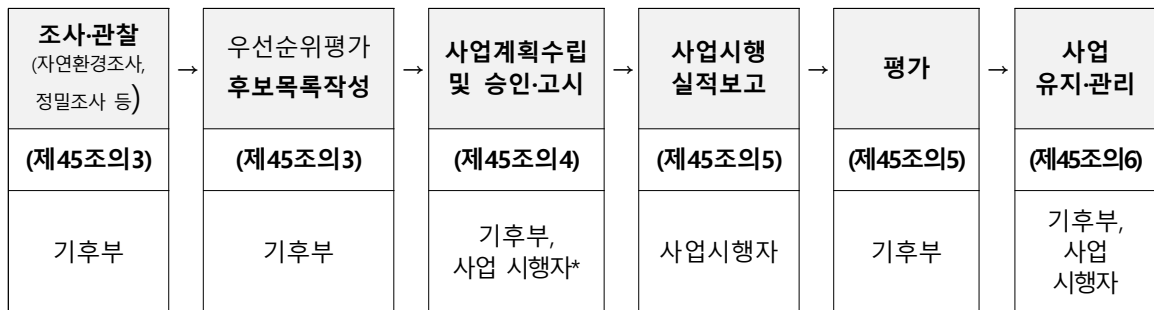
□ 자연환경복원 대상 및 체계 (법 제2조)

- (정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
- (복원대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의 기능향상, ▲단절된 생태계 연결 및 야생동물 생태통로 등 설치, ▲습지보호지역등 훼손된 습지복원, ▲야생생물서식지 복원, ▲하천법에 따른 보전·복원지구안에서 하천복원, ▲기타 기후부장관 고시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추진체계) 자연환경복원대상 사업별 해당 법령 및 조문에 따른 절차 이행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6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 절차



* 사업 시행자 :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 자연환경복원 추진현황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부분 재정사업으로 추진중

자연환경보전법 정의(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법률	주민의견 수렴 여부	예 산 과 목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법 제2조 제19호 가목	생태·경관보전 지역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제 14조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관리 (환특)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법 제2조 제19호 나목	도시생태복원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	○	도시생태축복원사 업 (기금)	도시생태축복원
법 제2조 제19호 다목	단절 생태계 연결 및 생태통로 설치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	국토생태 네트워크구축(환 특)	백두대간 등 생태축 연결복원
법 제2조 제19호 라목	훼손 습지 복원	습지보전법 제 17조	×	습지보전관리 (기금)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시행령 제2조 제1호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야생생물법 제 13조	×	-	-
시행령 제2조 제2호	협약등록습지 복원	습지보전법 제9조	×	-	-
시행령 제2조 제3호	하천 보전·복원 지구안 복원	하천법 제 45조	△	국가하천정비사업 (일반)	국가하천정비사업
시행령 제2조 제4호 (기타 기후부고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4대강 수계법	×	수변녹지조성사업 (기금)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자연공원법 제 17조의3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환 특)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훼손지 복원 후보목록의 복원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3~6	△	국토환경 녹색복원 (환특)	서천 장항습지복원사업, GB내 자연환경복원사업

* 주민의견수렴 여부의 "△"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경우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절차도

단계	주요 절차	주요 내용	관련법
1단계	자연 환경 훼손지 조사 (기 후 부)	• 전국자연환경조사,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습지조사,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등 기존 자료활용한 훼손 의심지역 도출 • 우선순위 평가기준(고시)*에 따른 현장조사·평가 수행 * 환경부 고시(제2024-63호)	제45조의3 제1항
2단계	복원 대상지역 선정 (기 후 부)	•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 선정	제45조의3 제1항
3단계	자연 환경 복원 사업 계획수립 (기 후 부·시행자) 계획승인·고시 (기 후 부)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사업계획 승인·고시 - 자연환경복원계획 수립과 중요사항 변경 시	제45조의4 제1항 ~제5항
4단계	사업 시행 (기 후 부·시행자)	• 설계 및 심의 - 사업계획 승인안에 따라 기본계획 및 설계 • 복원 시공 - 설계서에 따라 복원 시공	제45조의3 제2항,제3항 제45조의4 제6항,제7항
5단계	실적 보고·평가 (시행자→기 후 부)	• 사업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정기적으로 보고 • 기후부는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용지원 차등화	제45조의5
6단계	유지·관리 (기 후 부·시행자)	• 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된 자연환경이 지속되도록 유지·관리	제45조의6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3.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체계

<자연환경복원 후보목록 작성>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 (환경부, 지자체)	전국자연환경조사,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습지조사,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등 활용
----------------------------------	---



훼손지 복원 대상 후보지 선정 (환경부)	훼손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복원 효과 등을 조사·평가하여 우선 순위선정
----------------------------------	---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자연환경복원 사업계획 수립 (환경부,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사업대상지의 위치 및 현황분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계획,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그밖에 필요한 사항
---------------------------------------	---



자연환경복원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사업시행자는 복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환경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
---	---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환경부, 사업시행자)	자연환경복원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복원사업 시행
------------------------------------	--------------------------------



추진실적 보고 및 복원사업 평가 (환경부)	복원사업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정기적으로 보고 환경부는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용지원 차등화
---------------------------------------	---



유지·관리(사후관리) (사업시행자)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된 자연환경이 지속되도록 일정 기간 유지·관리
-------------------------------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